

조세·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15(월)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세율조정에 따른 정책방향

I 배경 및 문제점(당면과제 중심으로 작성)

최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대와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논쟁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조달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인 조세경쟁 아래에서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소득세는 과세기반이 협소하여 충분한 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계층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과세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통일이라는 잠재적인 재정위험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남북통일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과급력 때문에 현시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일지 모르지만, 향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논문을 통한

준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 시 반드시 언급되는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는 그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해야할 과제이며,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사전에 모색해 놓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부담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실태와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세부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를 통해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를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의 분포 및 그 추이를 분석한다. 이런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에 관한 분석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현행 면세제도 중 비중이 큰 4가지 면세유형(미가공식품, 교육용역, 의료·보건용역, 금융·보험용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후 부가가치세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II

조사 및 분석결과(연구진이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

1. 유효 세부담 및 그 추이 분석

가. 소득계층별 유효 세부담 및 그 추이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서 소득계층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구성된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즉, 소득계층 구분의 기준 소득은 가구의 자산수

준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모든 현금과 현물의 수입을 뜻하며, 자산의 거래나 이전으로 인한 손익이나 자산의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먼저, <표 1>의 첫 번째 열은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의 연간자료에 존재하는 가구를 소득 10분위별 구간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열은 소득 10분위별 평균소비성향¹⁾의 중위수를 나타낸다.²⁾ 여기서 평균소비성향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의 정의를 사용하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여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 대하여 감소함수라는 일반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1>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단위: 만원, %)

소득분위	평균소비성향 (%)	세부담액 (만원)	세부담률 (%)	
			소득기준	소비기준
1	117.9	42.8	7.26	7.11
2	94.6	74.9	5.83	7.35
3	87.0	111.8	5.45	7.68
4	83.3	144.5	5.17	7.81
5	79.2	175.6	4.98	7.79
6	78.1	200.5	4.81	7.75
7	73.6	226.6	4.69	7.77
8	70.8	252.7	4.33	7.76
9	64.6	282.3	4.02	7.85
10	56.5	347.0	3.34	7.75
전체 ¹⁾	78.2	182.6	4.80	7.67

주 1) 각 소득 10분위별 값 및 평균소비성향 전체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약 78.2%이고,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인 1분위 집단(117.9%)에서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

1)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이 양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다.

2) 중위수가 아닌 평균값을 사용하면 1분위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은 매우 작지만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가구가 전체 계급을 좌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중위수를 사용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세율조정에 따른 정책방향

를 많이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그 비율이 낮아져서 10분위의 최상위 소득집단에서는 평균적인 평균소비성향이 약 56.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이후의 분석 연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과 1995년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각각 95.0%, 97.4%였던 반면, 2000년 113.8%, 2005년 119.6%, 2010년 121.2%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2년 다시 117.9%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처럼 1분위 집단에서 평균소비성향이 100%보다 클 수 있는 이유는 고령가구의 존재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가구는 소득의 핵심 구성요소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거의 없어서 소득 수준은 낮지만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을 축소(dissaving)해 가면서 기존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 1분위 집단에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 연도마다 살펴본바 1990년 5.3%, 1995년 18.25%, 2000년 24.6%, 2005년 40.9%, 2010년 55.1%, 2012년 73.5%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고령가구 비중의 증가로 인해 소득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90년과 1995년의 평균소비성향이 100% 미만이었던 이유는 고령가구의 비중이 20%에도 미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 1>의 세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부담액 평균을 보여준다. 모든 분석 연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유효 부담액 자체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부담액 평균은 약 182.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인 1분위 소득집단의 세부담액은 42.7만원인 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세부담액은 증가하여 최상위 소득집단인 10분위에서는 평균 348.9만원을 부담하여 1분위 집단보다 8.1배 정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소비지출의 절대액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한다.

한편 <표 1>의 네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 비율을 나타낸다.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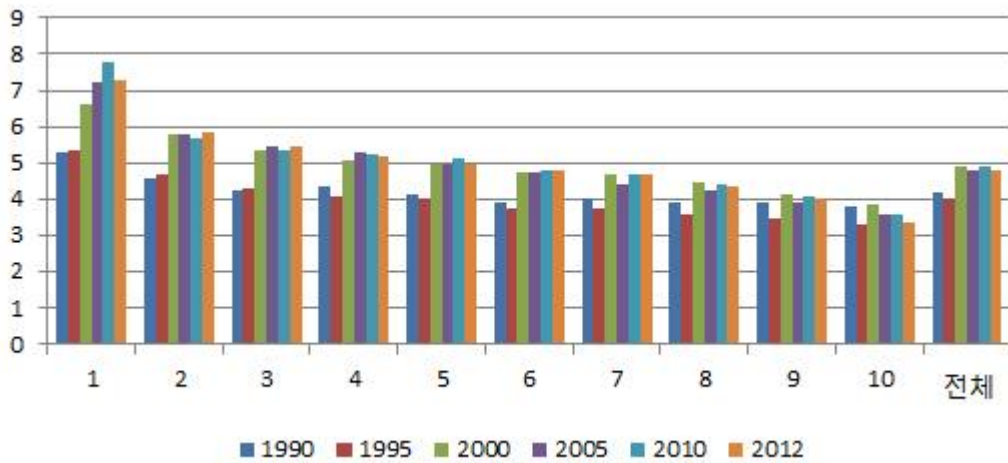
3)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인 1분위 집단을 제외하고 평균소비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집단은 분석 연도 내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 따라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 비율을 측정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비율은 소득이 낮은 분위에서 더 높은 역진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평균소비성향이 소득의 감소함수이고 모든 재화나 용역에 단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순수한’ 부가가치세 체계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에서 역진성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이다.⁴⁾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분위 소득집단의 소득기준 세부담 비율은 7.3%이고, 소득 분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분위 집단에서는 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진적인 현상은 모든 분석 연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과거보다 최근에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1990년의 경우 소득 1분위의 소득기준 세부담 비율은 소득 10분위의 세부담 비율의 1.4배인 반면, 2012년에는 2.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10분위의 세부담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하락하는 반면 소득 1분위의 세부담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소득 1분위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⁵⁾⁶⁾

-
- 4) 단일 세율을 갖는 ‘순수한’ 부가가치세 체계에서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 유효세율과 명목세율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득 대비 세부담의 비율은 바로 평균소비성향과 명목세율의 곱이 된다. 이때 명목세율은 모든 소득수준에 동일한 상수인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 대하여 감소하는 함수이다.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의 변화만이 세부담율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 5)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 5.3%, 1995년 18.2%, 2000년 24.6%, 2005년 40.9%, 2010년 55.1%, 2012년 73.46%로 파악되었다.
- 6) 일시적인 실직으로 소득이 급감하였지만 쌓아 둔 자산이 있어서 기존의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가구도 평균소비성향이 높겠지만 이런 가구가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림 1]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마지막으로 <표 1>의 다섯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유효 세부담 비율⁷⁾을 보여준다.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 즉 부가가치세의 평균유효세율은 거의 모든 분위에서 유사하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⁸⁾ 즉 평균유효세율 관점에서 세부담 비율을 측정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역진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 오히려 처음 4~5분위까지는 소득분위가 증가하며 세부담 비율 증가하는 누진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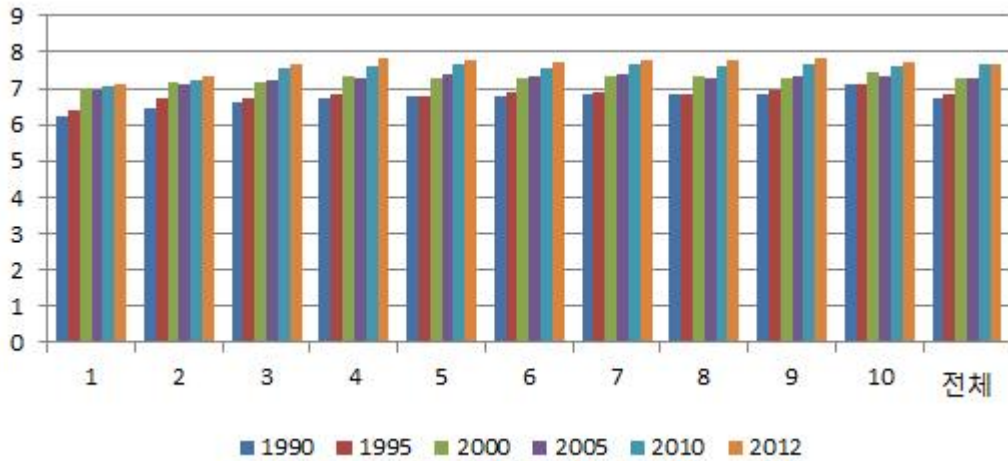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분위 소득집단의 평균유효세율은 7.1%이고, 소득 분위가 올라가면서 상승하여 4분위(7.8%)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분위들에 대해서는 7.7~7.8% 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모든 분석 연도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소득분위에서 과거보다 최근으로 갈수록 평균유효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소득 1분위의 평균유효세율은 1990년 6.2%에서 2012년 7.1%로 1.14배 증가하였고, 소득 10분위에서도 7.1%에서 7.7%로 1.0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소득분위에서 평균유효세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부가가

7) 이하에서는 소비지출 대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평균유효세율이라고 부른다. 물론 소비지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평균유효세율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8) [그림 IV-3]~[그림 IV-8]을 참조하기 바란다.

치세 과세체계의 세수성과(revenue performance)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을 시사한다.9)

[그림 2] 소득분위별 소비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나. 소비계층별 유효 세부담 및 그 추이 분석

Poterba(1989)가 미국의 개별소비세 세부담 분포에 대한 분석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가구들은 단기 소득이 아닌 예상되는 생애소득에 기초하여 소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생애소득/항상소득 가설에 따라 소비는 연간 소득보다도 생애소득을 더 잘 대리하는 변수가 된다. 또한 Crossley et. al.(2009)이 주목한 바와 같이 소득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단기 변동성이 상당하지만 소비지출은 대출 또는 저축을 통해 평탄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퇴자나 학생의 경우 현재의 소득은 낮은 소득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생애소득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학생들은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고, 은퇴자는 축적한 자산을 줄이면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높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비를 위해 상당 부분을 저축을 할 것이다. 이처럼 소비를 시점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9) 부가가치세 세수성과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C-efficiency는 통상 소비 대비 부가가치세수를 단일 표준세율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Keen(2013)에서는 C-efficiency(E^c)를 $E^c = \frac{V}{\tau_s C}$ 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V 는 부가가치세수, τ_s 는 단일 표준세율, C 는 소비를 나타낸다. 본 고의 소비 기준 세부담 비율을 명목세율 10%로 나눠주면 C-efficiency와 동일한 개념이 된다. 그리고 명목세율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기준 세부담 비율의 변화는 C-efficiency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는 행태로 인해 소비지출이 가계의 생활수준을 더 잘 포착하는 지표로 본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소득상태보다는 생애소득이나 생활수준이 한 가구 또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더 잘 보여준다면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비율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를 기준으로 세부담의 분배를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소절에서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유효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다. 먼저, 소비지출 분위별 세부담액을 보면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비지출이 높은 가구들에서 세부담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90년 소비지출 10분위의 세부담액은 1분위 세부담액의 6.0배, 1995년 5.4배, 2000년 5.3배, 2005년 5.8배, 2010년 11.2배, 2012년 10.4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소비지출 분위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을 보면, 대체로 중간분위까지는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중간분위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중간분위들에서의 세부담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인 <표 2>에서 보듯이, 소비지출 1분위의 소득기준 세부담 비율은 5.2%였고, 5분위 4.5%까지 감소하다가 상승세로 전환하여 10분위 5.1%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분석 연도마다 대체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지출 분위 간의 세부담률 차이는 소득 분위 간의 세부담률 차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분석에 따르면 최저 세부담률(5분위, 4.54%)에 비해 최고 세부담률(1분위 5.19%)은 겨우 0.65%p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비지출의 중간분위까지는 역진적인 모습이 보이나 그 이후는 누진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소비지출 분위 간 소득기준 세부담 비율의 차이는 매우 미약하여 대체로 비례적인 모양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소비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2012년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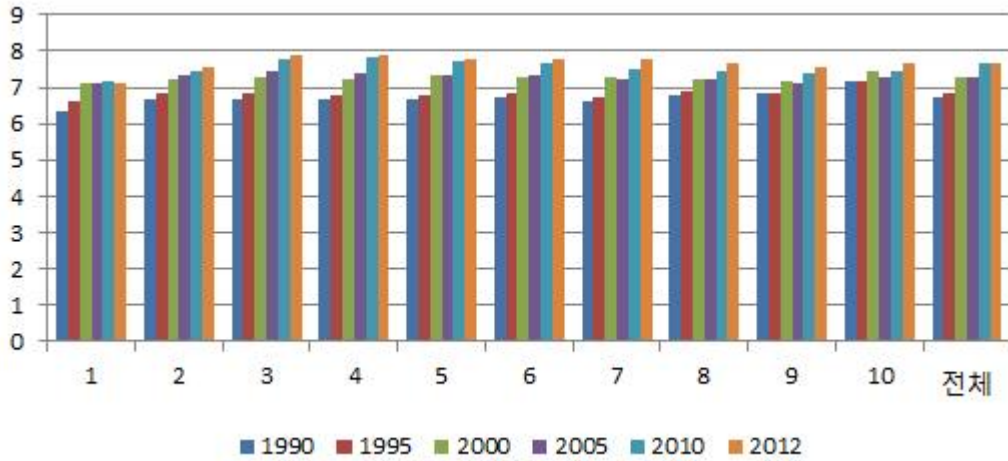
소비지출 분위	세부담액 (만원)	세부담률 (%)	
		소득기준	소비기준
1	39.7	5.19	7.13
2	75.5	4.93	7.53
3	111.1	4.85	7.88
4	140.5	4.58	7.89
5	172.4	4.54	7.78
6	198.3	4.72	7.79
7	227.5	4.65	7.76
8	259.3	4.81	7.68
9	305.1	4.91	7.55
10	411.3	5.05	7.68
전체 ¹⁾	182.6	4.80	7.67

주 1) 각 소비 10분위별 값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기준이다.

한편 소비지출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 즉 평균유효세율은 대체로 저분위와 고분위에서 낮고 중간분위에서 높은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소비지출 분위 간 세부담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고분위에서 더 높은 세부담률을 부담하고 있어서 누진적인 모습이 미약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세부담 비율이 7~8%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대체로 비례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소비지출을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경우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이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은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례적이거나 일부 누진적인 구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그림 3]에서는 분석 연도별·소비지출 분위별 세부담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소비지출 기준 세부담 비율을 보면 대체로 모든 소비지출 분위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세부담 비율이 높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도 관찰되었던 현상이다.

[그림 3] 소비분위별 소비대비 세부담 비율 추이



2. 주요 면세유형의 유효 세부담 및 과세전환 효과 분석

본 소절에서는 현행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과세로 전환할 때의 소득분배 및 세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면세제도가 없었을 때와 면세제도가 있었을 때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는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소비항목별 지출도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소절의 분석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구조 및 소비구조는 면세제도의 도입 및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정태적인 분석이다. 분석대상 면세제도는 규모가 큰 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 등 4가지 주요 면세유형을 대상으로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의 분석 절차를 거쳐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들 중 분석하고자 하는 면세 유형과 관련된 항목을 식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 중 미가공식료품과 관련된 소비항목을 구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과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과의 연계 지도를 통해 분석대상 중 면세가 적용되는 소비항목들과 연계된 산업연관표의 기본

부문을 찾는다. 세 번째 단계는 관련 산업연관표 기본부문들을 면세가 아닌 과세로 전환시켜 모든 기본부문의 유효세율을 다시 산출한다. 여기서 분석대상 면세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본부문뿐만 아니라 종전과 동일한 생산구조 아래에서 서로 연계된 다른 기본부문들의 유효세율도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산업연관표 기본부문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 연계 지도를 활용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각 소비항목별로 새로운 유효세율을 도출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런 작업들을 거쳐 면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유효 세부담을 계산함으로써 특정 유형의 면세제도 유무에 따른 유효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게 된다.

먼저, 미가공식료품에 면세를 허용함에 따른 세부담 경감 효과를 살펴본다. 즉 미가공식료품을 10%의 명목세율로 정상 과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를 허용함에 따라 가구유형별 세부담 경감 금액 및 평균유효세율 하락 정도를 분석한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아래의 [그림 4]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저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 경감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5.1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2.7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세부담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평균유효세율이 0.8%p 감소하였고 소득 분위가 높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이 0.06%p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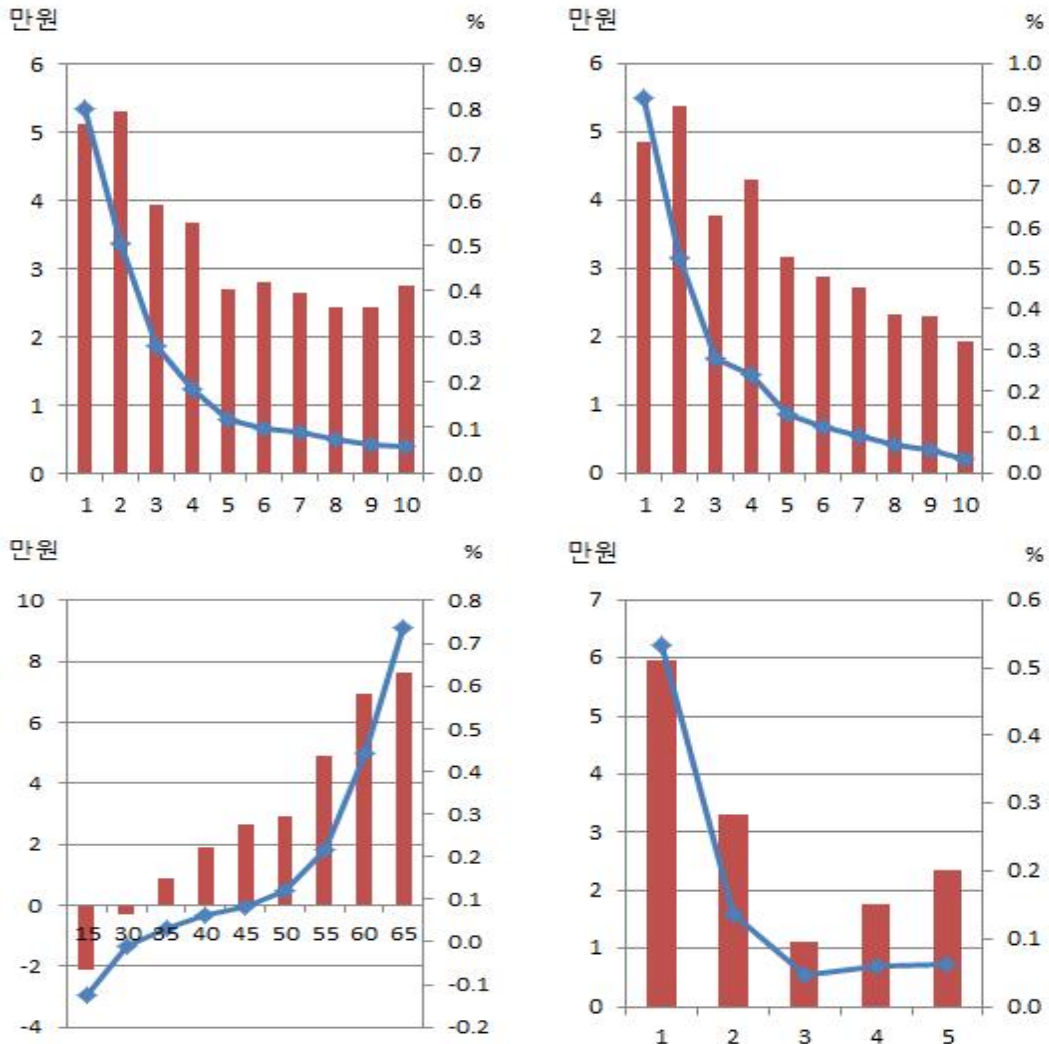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분위기를 구분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 4]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소비기준 1분위의 평균유효세율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0.9%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는 소비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져서 소비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은 0.04%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허용의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에서 세부담 경감효과(1가구당 연 7.7만원)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가구주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세부담 경감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가구주 연령이 35~40세인 경우 세부담 경감효과는 9천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가구주 연령이 35세 미만인 가구들의 경우 오히려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비중은 낮은 반면 미가공식품이 중간재로 투입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가공식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재화나 용역이 정상 과세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모든 재화나 용역의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같은 10%이다. 그런 다음, 미가공식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허용되면 미가공식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유효세율이 10%보다 낮으며 0%에 더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미가공식품이 중간재로 투입된 재화나 용역의 유효세율은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10%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유효세율이 낮아진 미가공식품의 소비비중이 유효세율이 높아진 다른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보다 훨씬 낮다면 미가공식품의 면세 허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가공식품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77개, 증가한 항목은 312개, 불변인 항목 3개로 파악되었다.¹⁰⁾

10) 불변인 항목들은 중간 투입물이 없는 가사용인급료, 식품관련서비스, 기타가사서비스 등 3가지이다.

[그림 4] 미가공식품의 면세효과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득 10분위, 소비지출 10분위,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면세효과 제시
-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3=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중퇴, 휴학, 재학; 4=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졸업; 5=대학원 이상
- 막대그래프는 과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에서 면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을 차감한 것이다.
- 실선그래프는 세부담액의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 바, 세부담액 감소분 및 평균유효세율의 형태가 “U자형”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낸다. 이는 가구주의 학력이 중간단계인 가구에서 면세 허용에 따른 혜택이 가장 작고 학력이 높거나 낮은 단계의 가구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가구에서 연간 세부담이 6.0만원

가량 감소하고 평균유효세율은 0.5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유형의 가구에 고령가구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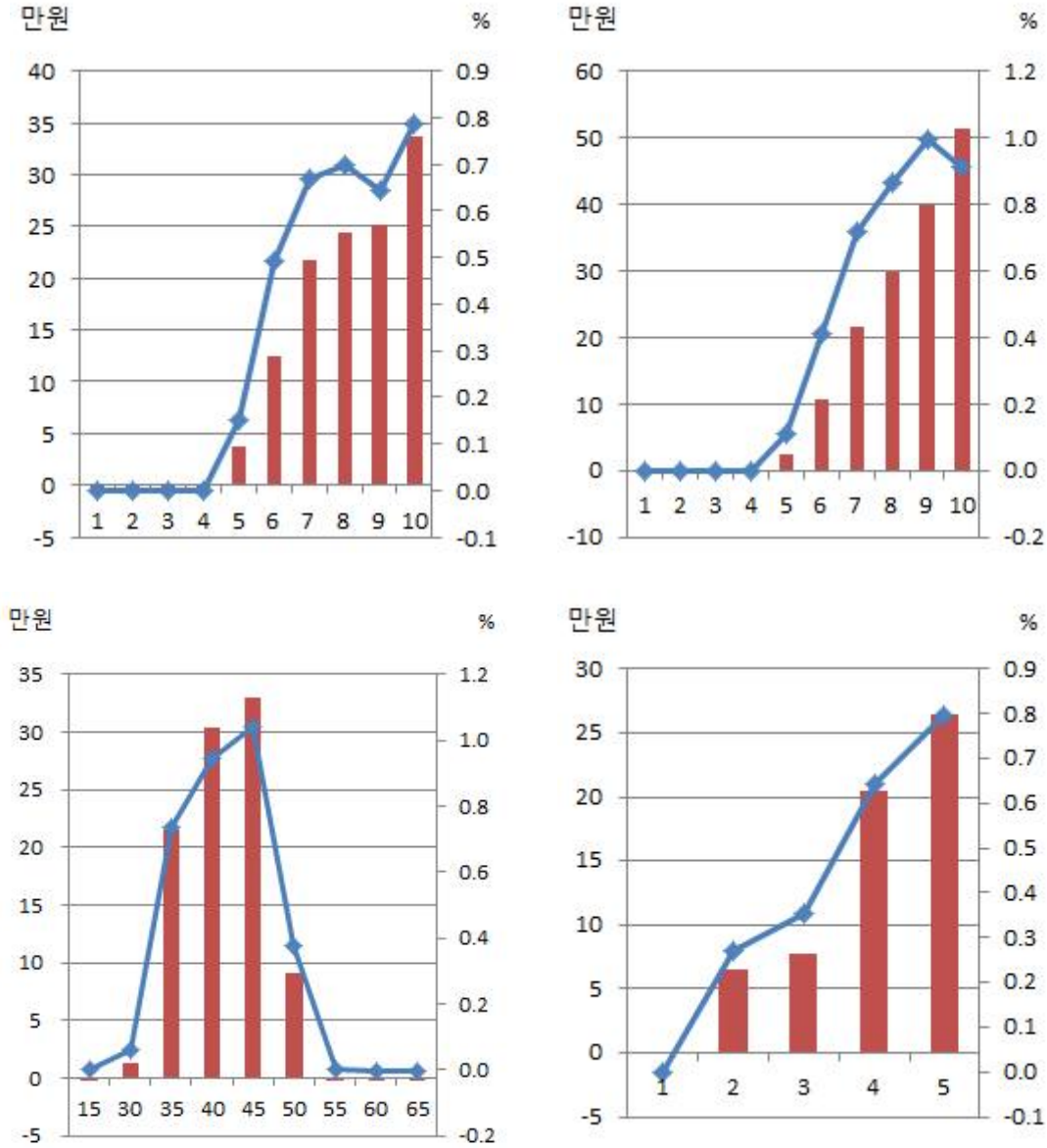
다음에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한 것이 가구유형별로 어떠한 세 부담의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아래의 [그림 5]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저 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소득 5분위 이상부터 세부담액 감소가 발생하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감소된 세부담액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 5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3.8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되었고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경감액이 증가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33.7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세 부담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 5분위에 속한 가구는 평균유효세율이 0.15%p 감소하였고 소득 분위가 높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이 0.79%p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분위기를 구분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 5]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교육용역에 면세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소비기준 5분위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2.6만원 및 0.11%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는 소비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져서 소비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51.3만원 및 0.91%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및 35세 미만의 젊은 가구에서는 세 부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자녀를 둘 가능성이 높은 중년가구(35~55세)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연령이 45~49세인 경우 연간 32.9만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고, 평균유효세율은 1.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혜택을 많이 본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44세인 가구들로 연 30.5만원의 세 부담 경감과 이로 인한 0.95%p의 평균유효세율 하락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 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세부담 경감액이 크고 평균유효세율의 하락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교육용역의 면세 허용으로 세부담액은 25.4만원 감소하고, 평균유효세율은 0.80%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교육용역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정리하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54개, 증가한 항목은 335개, 불변인 항목 3개로 파악되었다.

[그림 5] 교육용역 면세 효과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득 10분위, 소비지출 10분위,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면세효과 제시
-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3=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중퇴, 휴학, 재학; 4=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졸업; 5=대학원 이상
- 막대그래프는 과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에서 면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을 차감한 것이다.
- 실선그래프는 세부담액의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가구유형별로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아래의 [그림 6]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3분위 이상에 속한 가구부터 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세부담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미가공식품의 경우처럼 금융보험용역에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금융보험용역을 중간생산단계에서 투입하였던 재화와 용역이 있기 때문이다. 제Ⅲ장의 제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면세가 발생하면 최종생산단계에서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여 최종소비단계에 적용되는 유효세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분위별 평균유효세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3분위 이상에서는 평균유효세율이 1.2~1.7%p 정도 하락하였지만 하위 1분에서는 오히려 0.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97개, 증가한 항목은 292개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효세율이 증가된 292개 소비항목의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전반적인 세부담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는 대체로 소득 상위 분위에서 평균유효세율 감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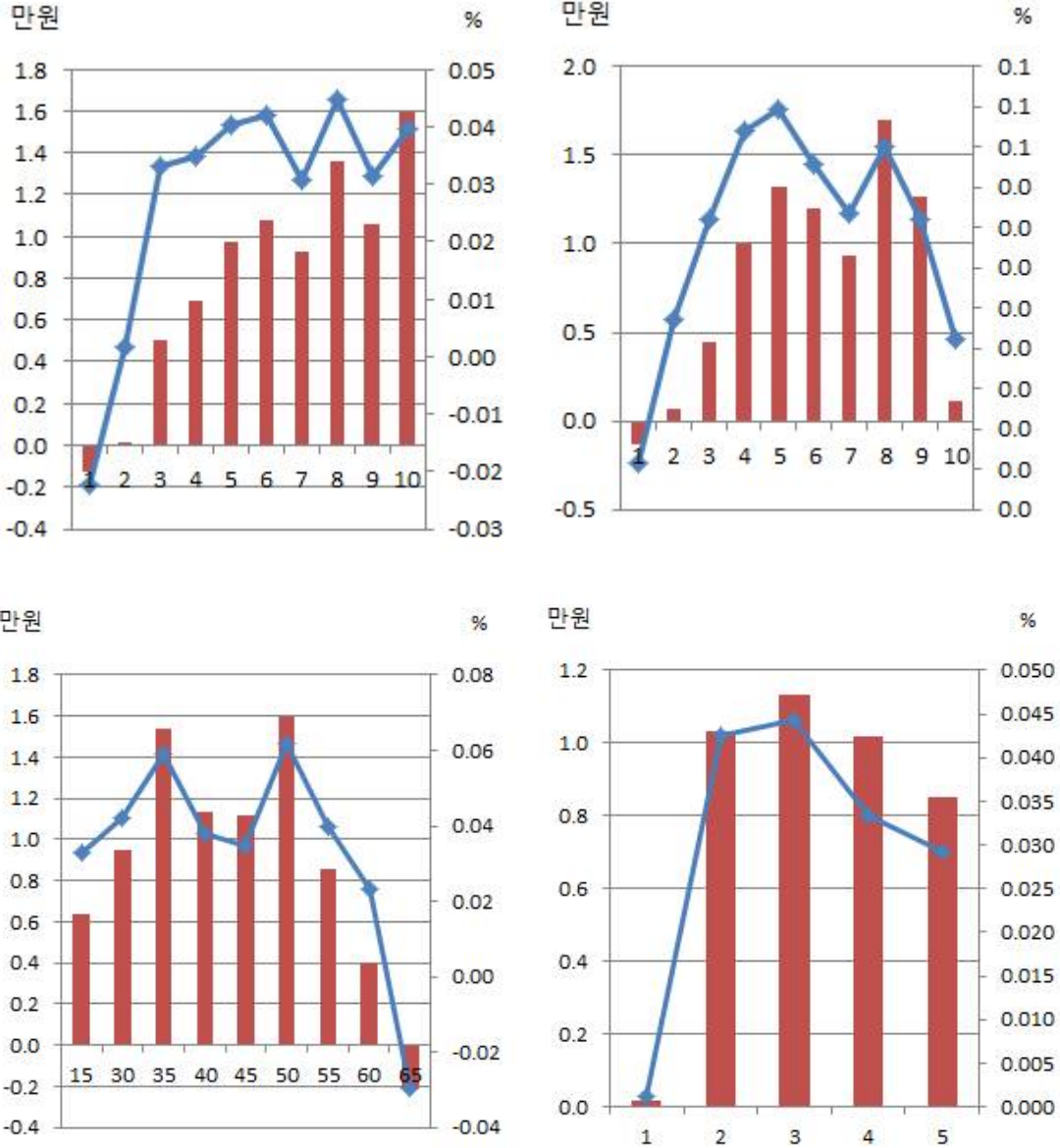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분위기를 구분한바 세부담 경감 혜택이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소비기준 4~9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소비 1~2분위 및 10분위에서는 세부담 경감 규모가 작거나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 6]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금융보험용역에 면세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소비기준 8분위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1.7만원 및 0.05%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1,300원 및 0.03%p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에서는 면세 허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보험용역의 소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년가

구(35~55세)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연령이 50~54세인 경우 연간 32.9만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고, 평균유효세율은 1.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혜택을 많이 본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44세인 가구들로 연 1.6만원의 세부담 경감과 이로 인한 0.06%p의 평균유효세율 하락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 바,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의 가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고졸 이상인 가구도 세부담 경감액이 연간 0.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있기에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평균유효세율의 하락 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금융보험용역의 면세효과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득 10분위, 소비지출 10분위,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면세효과 제시
-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3=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중퇴, 휴학, 재학; 4=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졸업; 5=대학원 이상
- 막대그래프는 과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에서 면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을 차감한 것이다.
- 실선그래프는 세부담액의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가 가구유형별 세부담 및 평균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아래의 [그림 7]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세부담 경감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 경감액은 1가구당 연 2.2만원 정도이나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은 5.7만원 경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세부담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평균유효세율은 0.38%p 감소하였고 소득 분위가 높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이 0.13%p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제도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절대 금액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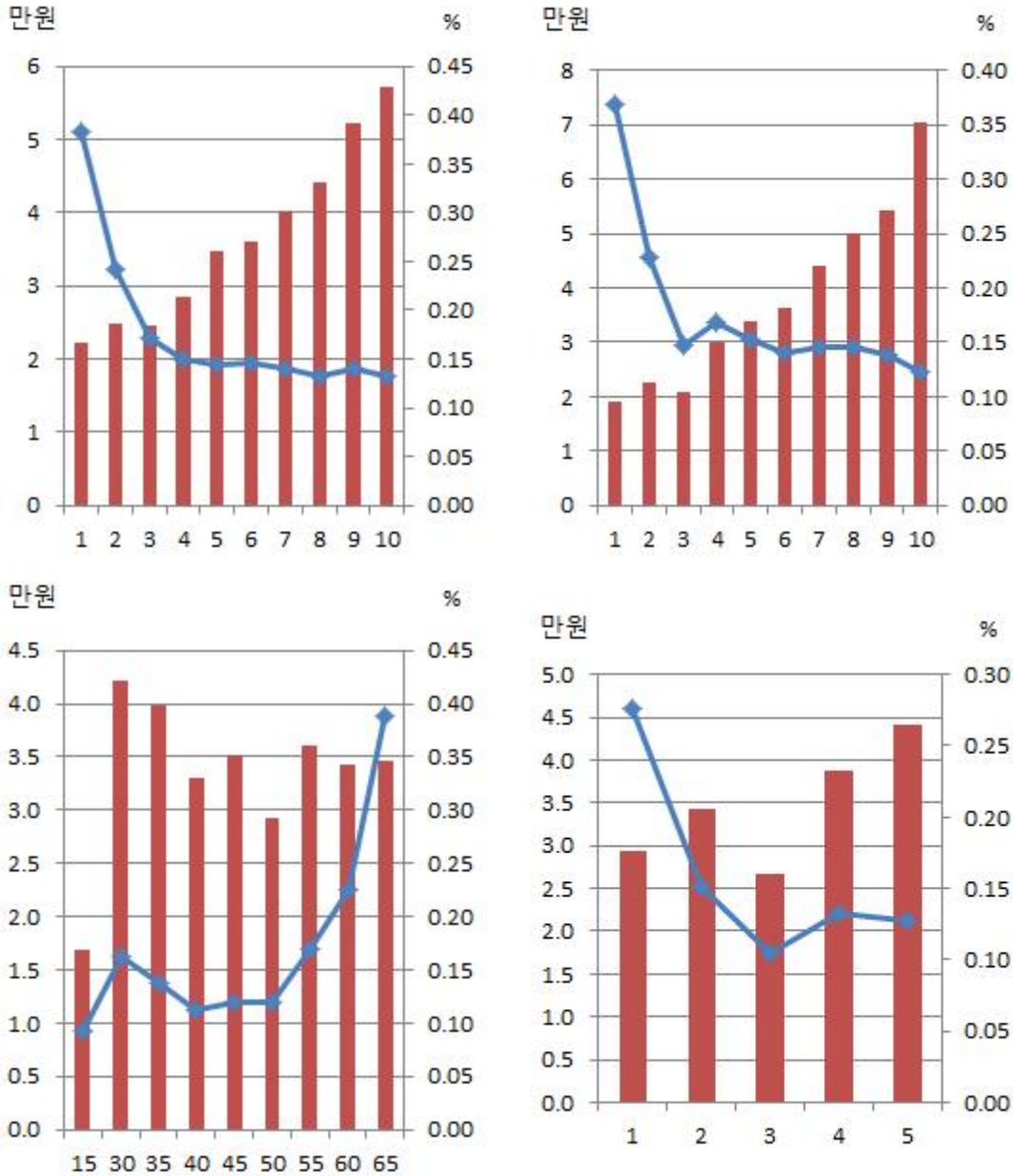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분위기를 구분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 7]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소비기준 1분위의 평균유효세율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로 0.37%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는 소비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져서 소비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은 0.12%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에서 평균유효세율 하락 효과(0.39%p)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가구주 연령이 15~34세인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은 0.09%p 정도 미약하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체적으로 평균유효세율 하락 효과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 바, 세부담액 감소 규모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유효세율은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91개, 증가한 항목은 298개, 불변인 항목 3개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소득분배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미가공식품 및 의료보건의료서비스의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품의 경우 면세 허용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도 소득분위가 낮은 쪽에서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해도 낮은 분위의 경감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의료보건의료서비스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경감액 절대규모로 보면 소비수준이 높은 고소득 분위 및 고소비 분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서비스나 금융보험서비스의 경우 면세제도로 인해 오히려 소득분배가 나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 허용으로 인해 평균유효세율의 감축효과가 소득 상위분위 및 소비 중상위 분위에서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득 저위분위 및 소비 저위분위에서는 오히려 평균유효세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그림 7] 의료보건용역의 면세효과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득 10분위, 소비지출 10분위,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면세효과 제시
-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3=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중퇴, 휴학, 재학; 4=대학(전문대, 초대 포함) 졸업; 5=대학원 이상
- 막대그래프는 과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에서 면세일 경우의 세부담액을 차감한 것이다.
- 실선그래프는 세부담액의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III

정책제언(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안과제별로 기술)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세부담의 역진성은 경제적 능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능력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높고, 높은 소득분위에서 낮은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세부담 비율을 과세베이스에 해당하는 소비지출 대비로 산출하면 이런 역진적인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누진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능력을 소비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에서도 드러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논쟁은 경제적 능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소비 모두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세부담의 분포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유효 세부담 분포는 특정 연도에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석 기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왔고, 면세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소비구조 변화와 더불어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 비중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가구의 비중이 저소득 및 저소비 분

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음에 따라 저분위의 유효 세부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소득 및 소비 1분위에서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은 낮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면세유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바 미가공식품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품에 대한 면세는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세부담 경감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 및 저소비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육용역의 경우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가 올라갈수록 세부담 경감액 규모는 커지면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액 비율의 감소폭도 대체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면 미가공식품이나 의료보건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세수증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금융보험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기대효과(정책제언에 따른 종합적 구체적 기대효과 작성)

유효세율을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에 대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반대 이유 중에 하나인 세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 분포에 대한 논의는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을 세부담의 역진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점점 더 타당하지 않음을 시

사한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특정 빈곤계층(예: 고령의 빈곤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에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세수확대 및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현행 면세제도에 대한 정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면세제도 중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는 그 혜택이 경제적 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면세제도로 파악되었다. 반면 미가공식품에 대한 면세는 경제적 능력이 낮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면세제도의 혜택의 분포를 감안하여 면세제도를 정비한다면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세제도의 과세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는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수확대 측면에서 정비할 때에는 중간단계에서 면세되기 보다는 최종단계에서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간추린 세법개정』, 각 연도.
-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유찬, 「유효부가가치세율 추정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 『재정정책논집』 제15집, 제4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3년, pp. 183~212.
-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세경사, 2011.
- 박명호,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재정포럼』 제14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8년 4월, pp. 52~70.
- 성명재,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 면세의 누적효과 추정 및 면세 개선 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3년, pp. 189~223.
- 성명재 · 박명호 · 이성식 · 박종수, 『중장기 부가가치세제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4.
- 통계청,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 보도자료, 2014. 5.
- _____,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2011. 8.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 홍성훈 · 성명재,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3.
- Ebrill, L., M. Keen, J. Bodin, and V. Summers, The Modern VA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1.
- Crossley, T. F., D. Phillips, and M. Wakefield, Chapter 10: Value Added Tax, The IFS Green Budget, edited by Chote, R., C. Emmerson, D. Miles and J. Shaw, IFS, 2009.
- Gottfried, P. and W. Wiegard, “Exemption versus Zero Rating: a Hidden

Problem of VA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6, 1991.

Marks, S. V., “The Value Added Tax in Indonesia: The Impact of Sectoral Exemptions on Revenue Potential and Effective Tax Rates,” 2003.

Murphy, R., “Is VAT regressive and is so why do the IFS deny it?.” *Tax Research UK*, 2010.

Poterba, J. M., “Lifetime Incidence and the Distributional Burden of Excise Tax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o. 2, 1989, pp. 325~330.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http://www.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

작성자 :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044-414-2258)

정재호